

#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,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83,3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,43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,776백만원이 증액된 234,603백만원 특별회계는 16,659백만원이 증액되어 48,748백만원임.

#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22,031백만원, 세외수입 11,511백만원, 지방교부세 134,167백만원, 재정보전금 5,15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61,744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,627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30,121백만원임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80,834백만원(예비비 2,800백만원 포함), 행정운영경비 40,179백만원, 재무활동 13,590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47,329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1,279백만원, 재무활동 140백만원임.

# 관계법령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7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시작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시작 15일전까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시작 10일전까지 의결 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6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·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#### □ 지방재정법 제40조

- ① 예산은 예산총칙,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(明示移越費)를 총칭한다.
-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